

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55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11.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의 확대 추진에 따라 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자치구와 사업소에 배분하고, 도시공원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의에 의한 매수사무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시로 환원하는 등 시·구간 사무의 배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시와 자치구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신규위임함(안 별표 2·3).
- 나. 보문산, 세천, 가양, 계족산공원의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공원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,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 권한은 환원함(안 별표 2·3).
- 다. 「염관리법」에 의한 염제조업 등에 관한 3개 사무는 염전에서 허가·취소·청문에 관한 사항으로 염전이 없는 우리시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함(안 별표 3).
- 라. 소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일부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(안 별표 3).
- 마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함(안 별표 2·3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염관리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관련부서 및 자치구와 합의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9. 9. 25. ~10. 15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푸른도시과란 제1호라목부터 더목을 마목부터 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푸른도시과	라.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	· 같은 법 제19조	공원관리 사업소장

별표 2 푸른도시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푸른도시과	3. 20m 이상 신설도로의 가로수 조성	·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·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	건설관리 본부장

별표 2 운송주차과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운송주차과	2.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·관리, 멸실의 경우 조치,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·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열람신청의 처리 나. 신규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신규등록의 거부 다. 변경등록의 처리 라. 이전등록의 처리	·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 · 같은 법 제8조·제9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·제3호 · 같은 법 제11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5호 · 같은 법 제12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6호	차량등록 사업소장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마. 말소등록의 처리, 자동차등록증·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·영치 및 폐기,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,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바. 압류등록의 처리 사.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아. 임시운행의 허가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자.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3. 과태료 부과 및 징수	· 같은 법 제13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7호·제8호·제9호 · 같은 법 제14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0호 · 같은 법 제1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1호 · 같은 법 제27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7호 · 같은 법 제28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8호 · 같은 법 제84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5호	

별표 3 경제정책과란 제8호를 삭제한다.

별표 3 기업지원과란 제1호를 삭제하고,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5.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설립·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.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보완 요구 및 통보 다.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 라.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마. 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	·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10조·제12조·제28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· 같은 법 제13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· 같은 법 제18조·제28조·제36조·제42조 · 같은 법 제18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	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바.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·중지 명령 및 통보 사. 자료제출의 요구 아.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·통보 자.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 차. 직장폐쇄 신고수리 카.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타. 과태료 부과·징수	· 같은 법 제21조·제42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·제22조 · 같은 법 제27조 · 같은 법 제31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· 같은 법 제3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· 같은 법 제4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· 같은 법 제9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	

별표 3 문화예술과란 중 “「전통사찰보존법」”을 “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표 3 푸른도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비고
푸른도시과	1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(보문산, 세천, 가양, 둔산대공원, 계족산공원을 제외한다. 다만, 계족산공원 중 장동산림욕장 구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 가. 녹지활용계약 나. 녹화계약 다.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라. 도시공원의 조성계획(변경)입안 및 결정(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)	·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· 같은 법 제13조 · 같은 법 제14조 · 같은 법 제16조 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	구청장	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비고
푸른도시과	<p>(1) 근린공원 입안</p> <p>(2) 소공원 어린이공원 입안·결정·인가</p> <p>(3) 주제공원(역사, 문화, 수변, 묘지, 체육공원 등)입안</p> <p>마. 공원조성계획의 정비</p> <p>바.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(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)</p> <p>사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</p> <p>아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 조치</p> <p>자. 점용공작물의 관리</p> <p>차. 도시공원의 점용허가</p> <p>카. 원상회복</p> <p>타.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허가</p> <p>파. 도시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</p> <p>하. 녹지의 설치 및 관리</p> <p>거.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·관리</p> <p>너. 녹지의 점용허가 등</p> <p>더. 입장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의 부과·징수</p> <p>러. 점용료의 강제 징수</p> <p>머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</p> <p>버.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</p> <p>서.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대장 작성·보관</p> <p>어.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p> <p>2. 광장시설 유지관리 (경관광장 등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광장에 한한다)</p> <p>3. 가로수 조성 및 관리. 다만,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.</p> <p>4. 산림 병해충등 예방 및 구제조치 명령</p>	<p>·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</p> <p>· 같은 법 제19조</p> <p>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</p> <p>·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</p> <p>· 같은 법 제22조</p> <p>· 같은 법 제23조</p> <p>· 같은 법 제24조</p> <p>· 같은 법 제25조</p> <p>· 같은 법 제27조</p> <p>· 같은 법 제33조</p> <p>· 같은 법 제36조</p> <p>· 같은 법 제37조</p> <p>· 같은 법 제38조</p> <p>· 같은 법 제40조·제41조</p> <p>· 같은 법 제43조</p> <p>· 같은 법 제45조·제47조</p> <p>· 같은 법 제46조</p> <p>· 같은 법 제51조</p> <p>· 같은 법 제56조</p> <p>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</p> <p>·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</p> <p>·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</p> <p>·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항</p>	구청장	

별표 3 운송주차과란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비고
운송주차과	4.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열람신청 처리 5.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(다만, 구청장의 촉탁에 한함)	·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 · 같은 법 제14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0호	구청장	

별표 3 도시계획과란 제4호가목(5) 중 “어린이공원”을 “어린이공원·소공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 2]				[별표 2]			
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	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
푸른도시과	1. (생략) 가. ~ 다. (생략) <신설> 라. ~ 디. (생략) 2. (생략) <신설>			푸른도시과	1. (현행과 같음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마. ~ 리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20m 이상 신설도로의 가로수 조성	· 같은 법 제19조 ·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 조제2항 ·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	공약관리 사업소장 건설관리 본부장
운송주차과	2.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.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 처리와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 본의 교부 열람신청의 처리 나. 신규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(재교부포함) 및 등 록의 거부 다. 변경등록의 처리 라. 이전등록의 처리 마. 말소등록에 관련된 사항 바. 압류등록 사.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아. 임시운행의 허가 자.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의 처리 3. 과태료 부과 · 징수	·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1호 · 같은 법 제8조 · 제9조 · 제8조제2항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2호 · 제3호 · 같은 법 제11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5호 · 같은 법 제12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6호 · 같은 법 제13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 2항제7호 · 제8호 · 제9호 · 같은 법 제14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10호 · 같은 법 제1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11호 · 같은 법 제27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17호 · 같은 법 제28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18호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35호	차량등록 사업소장	운송주차과	2.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.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· 관리 멸실의 경우 조치 자 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 항의 멸실 · 훼손이나 그 밖 의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 의 발급 열람신청의 처리 나. 신규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신규등록의 거부 다. 변경등록의 처리 라. 이전등록의 처리 마. 말소등록의 처리, 자동 차등록증 ·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 · 영치 및 폐기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 리,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바. 압류등록의 처리 사.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아. 임시운행의 허가 및 임 시운영허가번호판의 발급 과 반납의 처리 자.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의 처리 3. 과태료 부과 및 징수	·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1호 · 같은 법 제8조 · 제9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2호 · 제3호 · 같은 법 제11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5호 · 같은 법 제12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6호 · 같은 법 제13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 3항제7호 · 제8호 · 제9호 · 같은 법 제14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10호 · 같은 법 제1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11호 · 같은 법 제27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17호 · 같은 법 제28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18호 · 같은 법 제84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35호	차량등록 사업소장

현		행		개 정 안			
[별표 3]				[별표 3]			
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	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
경제정책과	8.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 의 권한 가. 설립 및 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.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의 보완요구 및 통보 다. 노동조합의 변경신 고서 수리 및 변경신고 증 교부 라. 노동위원회 의결 요 청 마. 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 바.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·중지명령 및 통 보 사. 자료제출의 요구 아. 단체협약의 신고수 리 및 시정명령·통보 자.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 차. 직장폐쇄 신고수리 카. 폭력행위 등의 신고 수리 타. 과태료의 부과·징수	· 「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」 제10 조·제12조·제28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9 조 · 같은 법 제13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 · 같은 법 제18조·제28 조·제36조·제42조 · 같은 법 제18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 · 같은 법 제21조·제 42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·제22조 · 같은 법 제27조 · 같은 법 제31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 · 같은 법 제3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 · 같은 법 제4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 · 같은 법 제9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		경제정책과	<삭제>		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 3]				[별표 3]			
소관 부서	위임사무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	소관 부서	위임사무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
가업지원과	1. <u>염제조업 등에 관한 다 음의 권한</u> 가. <u>염전개발 및 염제조 업 허가 및 변경</u> 나. <u>허가의 취소 등</u> 다. <u>청문</u> 2. ~ 5. (생략) <신설>	· 「 <u>염관리법</u> 」 제3조 · 같은 법 제23조 · 같은 법 제24조		가업지원과	<삭제>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</u> 가. <u>설립 및 해산신고 수 리 및 신고증 교부</u> 나. <u>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의 보완요구 및 통보</u> 다. <u>노동조합의 변경신고 서 수리 및 변경신고증 교부</u> 라. <u>노동위원회 의결 요청</u> 마. <u>임시총회 소집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통보</u> 바. <u>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·중지명령 및 통보</u> 사. <u>자료제출의 요구</u> 아. <u>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·통보</u> 자. <u>단체협약의 지역적 구 속력 적용 결정 및 통보</u> 차. <u>직장폐쇄 신고수리</u> 카. <u>폭력행위 등의 신고수 리</u> 타. <u>과태료의 부과·징수</u>	· 「 <u>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</u> 」 제10 조·제12조·제28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9 조 · 같은 법 제13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· 같은 법 제18조·제 28조·제36조·제42 조 · 같은 법 제18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· 같은 법 제21조·제 42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·제22조 · 같은 법 제27조 · 같은 법 제31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· 같은 법 제3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· 같은 법 제4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· 같은 법 제9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	

현		행		개 정 안			
[별표 3]				[별표 3]			
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	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 기관
문화예술과	1. (생략)	· 「전통사찰보존법」 제9조제2항	구청장	문화예술과	1. (현행과 같음)	· 「전통사찰의 지원 및 보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	구청장
푸른도시과	1. 산림 병해충등 예방 및 구제조치 명령 2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(보문산, 세천, 가양, 둔산대공원, 계족산공원을 제외한다. 다만, 계족산공원 중 장동산림욕장 구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 가. 녹지활용계약 나. 녹화계약 다.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라. 도시공원의 조성계획(변경)입안 및 결정(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) (1) 근린공원 입안 (2) 소공원, 어린이공원 입안·결정·인가 (3) 주제공원(역사, 문화, 수변, 묘지, 체육공원등) 입안 마.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바.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(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)	·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항 ·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· 같은 법 제13조 · 같은 법 제14조 · 같은 법 제16조 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·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· 같은 법 제19조 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	구청장	푸른도시과	1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(보문산, 세천, 가양, 둔산대공원, 계족산공원을 제외한다. 다만, 계족산공원 중 장동산림욕장 구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 가. 녹지활용계약 나. 녹화계약 다.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라. 도시공원의 조성계획(변경)입안 및 결정(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) (1) 근린공원 입안 (2) 소공원, 어린이공원 입안·결정·인가 (3) 주제공원(역사, 문화, 수변, 묘지, 체육공원 등) 입안 마.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바.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(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)	·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· 같은 법 제13조 · 같은 법 제14조 · 같은 법 제16조 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·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· 같은 법 제19조 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	구청장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 3]				[별표 3]			
소관부서	위임사무명	근거법령	수입기관	소관부서	위임사무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	사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 공고 아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 조치 자. 겸용공작물의 관리 차.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카. 원상회복 타.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허가 파. 매수대상토지의 매수 및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 하. 도시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거.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너.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·관리 더. 녹지의 점용허가 등 러. 입장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의 부과·징수 머. 점용료의 강제 징수 버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서.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어.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대장 작성·보관 저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3. 광장시설 유지관리 (경관광장 등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광장에 한한다)	·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· 같은 법 제22조 · 같은 법 제23조 · 같은 법 제24조 · 같은 법 제25조 · 같은 법 제27조 · 같은 법 제29조·제30조·제32조 · 같은 법 제33조 · 같은 법 제36조 · 같은 법 제37조 · 같은 법 제38조 · 같은 법 제40조·제41조 · 같은 법 제43조 · 같은 법 제45조·제47조 · 같은 법 제46조 · 같은 법 제51조 · 같은 법 제56조 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			사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위탁 아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 조치 자. 겸용공작물의 관리 차.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카. 원상회복 타.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허가 파. 도시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하.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거.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·관리 너. 녹지의 점용허가 등 더. 입장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의 부과·징수 러. 점용료의 강제 징수 머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버.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서.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대장 작성·보관 어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2. 광장시설 유지관리 (경관광장 등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광장에 한한다) 3.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. 다만,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. 4. 산림 병해충등 예방 및 구제조치 명령	·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· 같은 법 제22조 · 같은 법 제23조 · 같은 법 제24조 · 같은 법 제25조 · 같은 법 제27조 · 같은 법 제33조 · 같은 법 제36조 · 같은 법 제37조 · 같은 법 제38조 · 같은 법 제40조·제41조 · 같은 법 제43조 · 같은 법 제45조·제47조 · 같은 법 제46조 · 같은 법 제51조 · 같은 법 제56조 ·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·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·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·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3항	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 3]				[별표 3]			
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 기관	소관 부서	위 임 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 기관
운송주차과	4.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열람 신청 처리	·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1호	구청장	운송주차과	4.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열람 신청 처리	·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1호	구청장
	5.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(다만 구청장의 촉탁에 한함)	· 같은 법 제14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10호			5.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(다만 구청장의 촉탁에 한함)	· 같은 법 제14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제10호	
도시계획과	1. ~ 4. (생략) 가. (생략) (1) ~ (4) (생략) (5) 공원(어린이공원에 한함) (6) ~ (39) (생략)			도시계획과	1. ~ 4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(1) ~ (4) (현행과 같음) (5) 공원(어린이공원·소 공원에 한함) (6) ~ (39) (현행과 같음)		

관 계 법 령

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】

제21조 (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승인 절차,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
2. 가로수를 옮겨심기
3. 가로수의 제거
4.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

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,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]

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】

제24조 (가로수 조성·관리) ① 영 제19조제5조에 따른 가로수 조성·관리기준은 별표10과 같으며, 그 밖에 가로수 조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6.20>

② 삭제 <2008.6.20>

③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·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6.20>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】

제19조 (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) ①도시공원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·관리한다.

②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·광

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에게, 2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(재정)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2.29>

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·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제29조 (토지매수의 청구) ①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(이하 "매수대상토지"라 한다)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
2. 토지의 사용·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
3.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

②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.

③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 (매수청구의 절차 등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

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.

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(이하 "매수가격"이라 한다)은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·형상·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 (협의를 의한 토지의 매수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을 매수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·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제1항, 제70조, 제71조,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【 염관리법 】

제3조 (염제조업 등의 허가 <개정 2007.12.27>) ① 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개정 2007.12.27, 2008.2.29, 2008.12.19>

1. 염전에서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
2.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체염의 제조

② 삭제 <1999.2.5>

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7.12.27>

제23조 (허가취소 등) 시·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

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2.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
3.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4.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(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

[전문개정 2007.12.27]

제24조 (청문)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0조의2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·도지사가 제23조에 따라 영제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2.29, 2008.12.19>[전문개정 2007.12.27]

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】

제24조 (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

1.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

2.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, 둘 이상의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

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

2.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
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둘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

2.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[전문개정 2009.2.6]

제29조 (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)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·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·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.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(이하 "대도시 시장"이라 한다)이 직접 결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. 다만, 제4호의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.

1.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

2.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
3. 제39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
4.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

[전문개정 2009.2.6]

제43조 (도시계획시설의 설치·관리) ① 지상·수상·공중·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·명칭·위치·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용도지역·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**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**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,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 [전문개정 2009.2.6]

제86조 (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.

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, 둘 이상의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광

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⑥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·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**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**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(국공유지는 제외한다)의 소유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공공기관
3. 그 밖에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자

[전문개정 2009.2.6]

제88조 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)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(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제3항에서 같다)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**제43조제2항**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, 위해 방지, 환경오염 방지, 경관 조성,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

인가할 수 있다.

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**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**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, 자금계획, 시행기간, 그 밖에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2.6]

제90조 (서류의 열람 등) ①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,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9.2.6]

제91조 (실시계획의 고시)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**제88조**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2.6]